2022. 1기확정 부가세 신고안내

■ 2022 개정세법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사유 확대(부법 48조 ③, 66조 ①)[p.36]

-(대상확대)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사유추가)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

◎ 적용기한 : 20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령 42조)[p.126]

-(추가)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중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 적용시기 : 20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령 33조 ②)[p.163]

-(추가)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적용시기 : 2022.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법 17조 ③)[p.185]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 도래 및 대가 수령

→ 대가수령 삭제

◎ 적용시기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령 68조)[p.197]

종전	개정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1억원**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령 70조 ①)[p.200]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적용시기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법 34조의2 ①)[p.207]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경우

8.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법 29조 ⑨, 부령 64조 ②)[p.238]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①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신설)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①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적용시기 :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법 42조, 부령 84조 ②)[p.275]
◎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10.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령 75조)[p.293]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 수령 → **1년 이내**
◎ 적용시기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령 75조)[p.293]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인정
→ 6개월 이내
◎ 적용시기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령 75조)[p.293]
-(추가)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추가)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적용시기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법 60조 ⑤)[p.315]
-(대상추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 적용기한 :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법 46조)[p.327]

◎ 적용기한 연장 : 2023.12.31.

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법 47조, 부령 89조)[p.327]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 적용기한 :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법 75조)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 적용기한 : 2022.1.1. 이후 판매·결제 대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대상 한시적 확대(107p)

[개정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포장 김치, 젓갈류 등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커피 및 코코아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령 제91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6월 2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분류표"를 "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0409 0410 1212 2501 1209	① 천연꿀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하거나 생산한 재화를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별표 1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268p)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승인일자	카드사	가맹점사업자	가맹점명	공급가	세액	봉사	합계	가맹점유형	업태	업종	공제여부결	비고
2022-04-14	현대카드주	726-63-	현대명품크린세탁	8,182	818	0	9,000	간이과세자	서비스업	세탁소	공제	일반
2022-04-07	신한카드 주	207-74-	한양떡집	12,000	0	0	12,000	간이과세자	제조	떡	불공제	간이
2022-04-01	신한카드 주	232-71-	한담 대박 농수산 직거래장터	10,000	0	0	10,000	간이과세자	소매	과실	불공제	간이
2022-04-01	현대카드주	726-63-	현대명품크린세탁	17,273	1,727	0	19,000	간이과세자	서비스업	세탁소	공제	일반

[현대명품크린세탁] 가맹점유형 : 간이과세자 / 비고 : 일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기준일자
726-6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날짜는 2022년 07월 01일 입니다.	2022-07-05

[한양떡집] 가맹점유형 : 간이과세자 / 비고 : 간이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기준일자
207-7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날짜는 2022년 07월 01일 부터입니다.	2022-07-05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

승인일자	카드사	가맹점 사업자번호	가맹점명	공급가액	세액	봉사료	합계	가맹점유형	업태	업종	공제여부 결정	비고
2021-11-29	현대카드주식	339-01	크린위드	9,909	991	0	10,900	간이과세자	서비스	세탁중개업	공제	일반
2021-11-23	현대카드주식	339-01	크린위드	6,727	673	0	7,400	간이과세자	서비스	세탁중개업	공제	일반
2021-11-18	삼성카드주식	557-35	케리커피(KERRI CO	1,819	181	0	2,000	간이과세자	음식점	커피 전문점	불공제	간이
2021-11-18	비씨카드 (주)	526-07	엄마백반집	20,910	2,090	0	23,000	간이과세자	음식	한식	불공제	간이
2021-11-08	현대카드주식	339-01	크린위드	7,091	709	0	7,800	간이과세자	서비스	세탁중개업	공제	일반
2021-10-31	신한카드 주식	466-25	픽미픽미 아이스크림	18,637	1,863	0	20,500	간이과세자	도매 및 소매업	과자, 식품, 아	불공제	간이
2021-10-27	비씨카드 (주)	574-14	개인택시(부산37바2	6,600	0	0	6,600	간이과세자	운수	택시	불공제	간이
2021-10-24	삼성카드주식	771-33	사평커피	3,637	363	0	4,000	간이과세자	음식점업	커피 전문점	불공제	간이
2021-10-18	현대카드주식	339-01	크린위드	7,636	764	0	8,400	간이과세자	서비스	세탁중개업	공제	일반
2021-10-01	현대카드주식	339-01	크린위드	4,455	445	0	4,900	간이과세자	서비스	세탁중개업	공제	일반
2021-07-24	신한카드 주식	180-09	상델	3,182	318	0	3,500	간이과세자	음식점업	커피	불공제	선택불공제
2021-07-24	신한카드 주식	180-09	상델	1,819	181	0	2,000	간이과세자	음식점업	커피	불공제	선택불공제

[케리커피] 가맹점유형 : 간이과세자 / 비고 : 간이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기준일자
557-3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입니다.	2022-01-11

[크린위드] 가맹점유형 : 간이과세자 / 비고 : 일반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기준일자
339-0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날짜는 2021년 07월 01일 입니다.	2022-01-11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확대(277p)

◉대통령령 제3273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각각 "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

제40조제1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

제84조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65"를 "100분의 75"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00분의 55"를 "100분의 6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45"를 "100분의 5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0분의 55"를 "100분의 65"로, "100분의 45"를 "100분의 55"로,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조회 방법(333p)

기준년도	분기	은행명	품목구분	결제일자	국고입금예정세액
2021	1분기	농협은행	스크랩등	2021-03-04	65,180
2021	2분기	농협은행	스크랩등	2021-06-11	121,500
2021	3분기	농협은행	스크랩등	2021-09-28	71,760
합계					258,440

■ 판매대행자료 조회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홈택스조회]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부가가치세 포함,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제외)

순번	승인년월	건수	매출금액	판매(결제)대행업체 상호
합계				
26	2021-04			주식회사 위대한상상
27	2021-04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주식회사
28	2021-04			쿠팡 주식회사
29	2021-04			(주) 다날
30	2021-04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31	2021-05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매출조회]

매출

인쇄 상세내역 다운로드 이메일 보내기

매출구분	매출	부가세	합계
기타매출			
카드매출			
현금매출			
배민만나서결제 카드			
배민만나서결제 현금			

- 해당 자료는 부가세 신고를 위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매출구분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신고를 해주세요.
- 상세내역 다운로드를 통해 매출구분별 상세내용 및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구분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현금매출은 사장님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 국세청에 수집되고 있습니다.
- 배민만나서결제 카드 내역은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팡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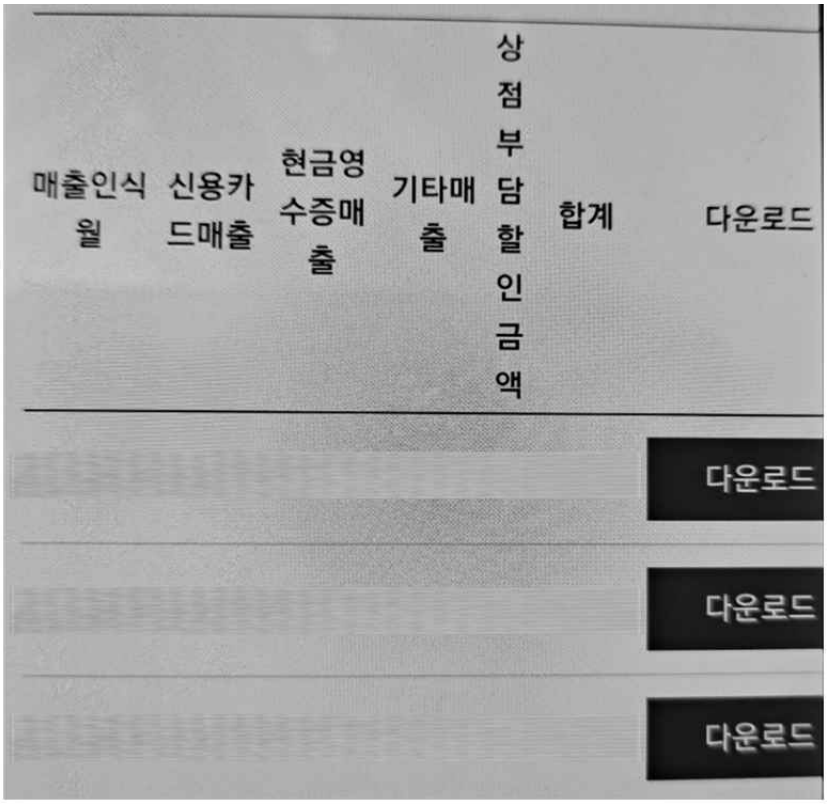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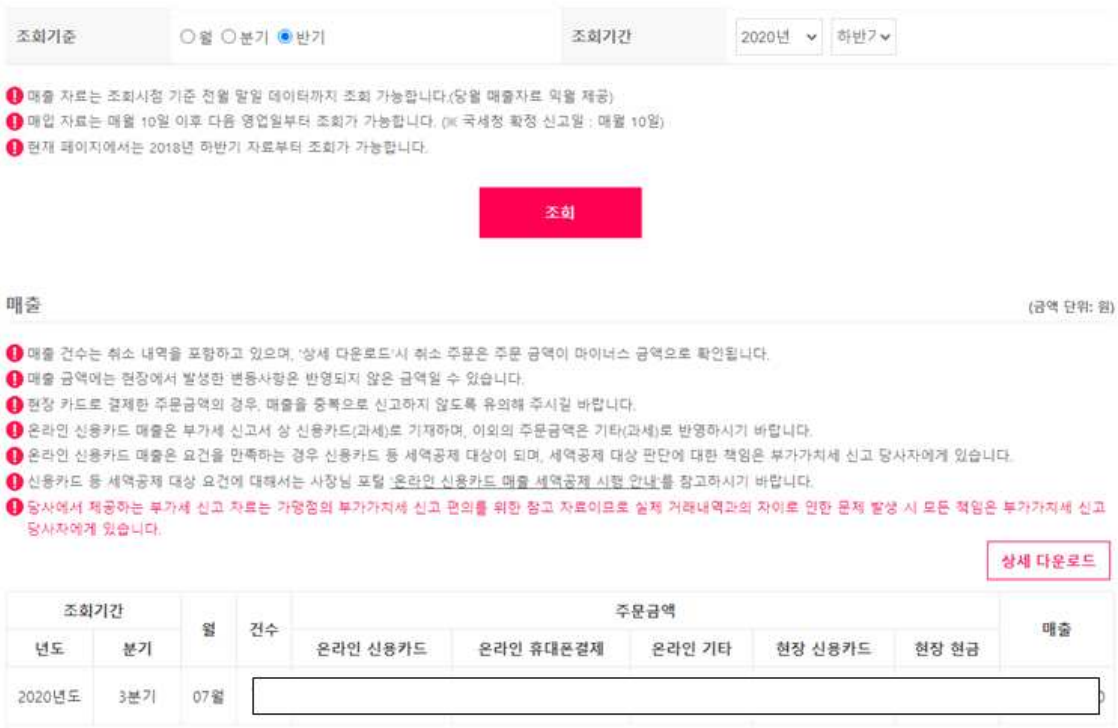
[요기요 매출조회]